##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소라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 961 발 의 년 월 일:2023년 07월 19일 발 의 자:이소라, 김규남, 김영철, 김용일, 김원태, 남창진,

김용일, 김원태, 남창진, 박승진, 박영한, 신복자, 왕정순, 윤종복, 이민옥, 이영실, 이용균, 이원형, 임종국, 전병주, 최민규, 한 신, 홍국표 의원(20 명)

#### 1. 제안이유

○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되는 실태조사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주거 형태, 소득 수준, 경제 활동 참가율을 추가함(안 제10조제2항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건강가정기본법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"성별"을 "성별, 주거형태"로, "생활수준"을 "생활수준, 소득수준, 경제활동 참가율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0조(실태조사 등) ① (생 략)	제10조(실태조사 등) ① (현행과 같
	음)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	2
인가구의 연령, <u>성별</u> , 지역 및 <u>생</u>	<u>성별, 주거형태</u>
<u>활수준</u>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	<u>생활수</u>
어야 한다.	준, 소득수준, 경제활동 참가율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